

서울특별시마포구공공시설내의신문·복권판매대,매점및 식음료용자동판매기설치계약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4-106
----------	--------

제출년월일 : 2014. 11. .

제 출 자 :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1. 개정사유

현행 조례의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사항을 반영하고, 공공시설 내 매점·자동판매기 등의 우선계약대상 범위를 추가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위법에 규정되어 있는 핵심용어를 사용하여 조례명을 간결하게 수정

-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공시설 내의 매점 운영 및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나. 상위법 개정에 따른 근거조항 수정(안 제1조)

현행

개정안

「장애인복지법」 제38조

「장애인복지법」 제42조

「모자복지법」 제15조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5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다. 공공시설 내의 매점 등에 대한 우선계약대상 추가(안 제1조)

- 서울지방보훈청의 권고에 따라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을 우선 계약대상에 추가

라. 계약의 해지기준을 신설(안 제6조의2)

마. 우선계약대상이 2명 이상 신청한 경우 세부 평가기준 추가(안 별표)

바. 법제처의「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

3. 개정근거

- 가. 「장애인복지법」 제42조
- 나. 「노인복지법」 제25조
- 다.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5조
- 라.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 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8조의2

4. 개정조례 안 : 따로 붙임

5.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6. 기타사항

- 가. 입법예고 : 2014. 10. 2. ~ 2014. 10. 22. (제출된 의견 없음)
- 나. 자치법규 부패영향 자율평가 결과 : 권고사항 반영
 - 관련조문 : 제3조(사전공고)
 - 평가기준 : 예측가능성
 - 권고사항 : 공공시설 내 매점 등의 설치 계약에 참여의사가 있는 우선계약 대상자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계약 절차의 객관성·투명성 확보를 위해 사전공고 시기를 명시
- 다. 자치법규 성별영향 분석평가 : 원안 동의
- 라. 서울특별시 마포구 조례·규칙 심의회 심의·의결 (2014. 11. 11.)
- 마. 서울특별시마포구공공시설내의신문·복권판매대,매점및식음료용자동판매기설치 계약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 바. 신·구조문 대비표 1부

서울특별시마포구공공시설내의신문·복권판매대,매점및 식음료용자동판매기설치계약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마포구공공시설내의신문·복권판매대,매점및식음료용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마포구공공시설내의신문·복권판매대,매점및식음료용자동
판매기설치계약에관한조례”를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공시설 내의 매점 운영
및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42조, 「노인복지법」 제25조,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5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8조의2에 따라 서울특
별시 마포구의 공공시설 내에 식료품·사무용품·신문 등 일상생활용품의
판매를 위한 매점 운영 또는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허가하거나 위탁할때에
는 장애인, 65세 이상 노인, 한부모가족 또는 한부모가족복지단체, 독립유
공자·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의 신청이 있는 경우 우선적으로 반영하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그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 제목 “(적용의 범위)”를 “(적용 범위)”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구”를 “서울특별시
마포구(이하 “구”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신문판매대 등

을”을 “식료품·사무용품·신문 등 일상생활용품의 판매를 위한 매점 또는 자동판매기(이하 “매점등”이라 한다)를”로, “타법령이”를 “다른 법령에서”로, “의한다”를 “따른다”로 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사전공고)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또는 그 소속 기관의 장과 구 지방공기업의 장은 제2조에서 정한 공공시설에 매점 등의 설치 계약대상이 있을 때에는 계약예정일 60일 이전에 구보에 게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신문판매대 등의 설치계약”을 “매점등의 설치 계약”으로, “당해”를 “해당”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신문판매대 등의 설치계약서(당해)”를 “매점등의 설치 계약신청서(해당)”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이 조례에 따라 우선계약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구에서 확인이 가능한 서류는 생략)

제5조제1항 중 “제4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4조에 따른”으로, “장애인등”을 각각 “장애인, 65세 이상 노인, 한부모가족 또는 한부모가족복지단체,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이하 “장애인등”이라 한다)”으로, “장애인등 2인이상이”를 “장애인등이 2명 이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귀책사유없이 1월이상”을 “귀책사유없이 1개월 이상”으로 한다.

제6조의 제목 “(사업의 의무)”를 “(사업자의 의무)”로 하고, 같은 조 중 “제5

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5조에 따라”로, “신문 판매대등”을 “매점등”으로,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제2조관련 별표1의 장애인등급 2급 이상인 자는”을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 관련 별표 1의 장애등급 제2급 이상인 장애인은”으로,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계약의 해지) 계약을 체결한 장애인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계약을 체결한 사람이 제6조를 위반한 경우
2. 허위로 허가를 받아 계약을 한 경우
3. 계약을 체결한 사람이 사망한 경우
4. 그 밖에 관련법령 및 계약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제7조 중 “신문판매대등”을 “매점등”으로, “징수기준 및 방법에 관하여는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시행령 및 서울특별시마포구공유재산관리조례등”을 “징수기준 및 방법은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 시행령」 및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등”으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장애인등 2명 이상이 신청한 경우 우선순위
(제5조제1항 관련)**

순위	장애인	65세 이상 노인	한부모가족·한부모가족복지단체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 및 그 유가족
1	장애등급 1~2급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	장애등급 3~4급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납세 실적이 없는 사람(주민세 개인 균등분 제외)	납세 실적이 없는 사람(주민세 개인 균등분 제외)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를 제외한 자	납세 실적이 없는 사람(주민세 개인 균등분 제외)
3	장애등급 5~6급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납세 실적이 없는 사람(주민세 개인 균등분 제외)		한부모가족복지단체	

※ 신청자의 우선순위가 같은 경우에는 다음 순위에 따른다.

1. 재산 및 월 평균소득이 적은 사람
2. 세대원 중 장애인이 있는 사람
3. 부양가족 수가 많은 사람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서울특별시마포구공공시설내의신문·복권판매대, 매점및식음료용자동판매기설치계약에관한조례</p> <p>제1조(목적) 이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38조, 노인복지법 제25조, 모자복지법 제15조,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마포구(이하 “구”라 한다)가 설치관리하는 공공시설내의 신문, 복권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자동판매기(이하 “신문판매대등”이라 한다)를 설치·계약할 때에는 장애인(장애인복지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자) 및 65세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모자가정의 여성, 독립유공자 유가족(이하 “장애인등”이라 한다)이 우선하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그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서울특별시 마포구 공공시설 내의 매점 운영 및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 42조, 「노인복지법」 제25조,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5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8조의2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의 공공시설 내에 식료품·사무용품·신문 등 일상생활용품의 판매를 위한 매점 운영 또는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허가하거나 위탁할 때에는 장애인, 65세 이상 노인, 한부모가족 또는 한부모가족복지단체,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의 신청이 있는 경우 우선적으로 반영하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그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제2조(적용의 범위) ① 이 조례의
적용대상 공공시설의 범위는 다
음 각호와 같다.

1. 구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

2. 3. (생략)

② 제1항에서 정한 공공시설에
신문판매대 등을 설치할 때에는
타법령이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다만, 매점의 경우에는 그 규모
가 10㎡이하인 시설에 한한다.

제3조(사전공고) 서울특별시마포
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
다) 또는 그 소속 기관의 장과
구지방공기업의 장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에 신문판
매대 등의 설치계약대상이 있을
때에는 이를 구보 게재 등의 방
법에 의하여 사전공고 하여야
한다.

제4조(신청) 신문판매대 등의 설

제2조(적용 범위) ① -----

각 호-----.

1. 서울특별시 마포구(이하
“구”라 한다) --

2. 3. (현행과 같음)

② ----- 식
료품·사무용품·신문 등 일상
생활용품의 판매를 위한 매점
또는 자동판매기(이하 “매점
등”이라 한다)를 -- 다른 법령
에서 -----
----- 따른다. -----

-----.

제3조(사전공고) 서울특별시 마포
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
다) 또는 그 소속 기관의 장과
구 지방공기업의 장은 제2조에
서 정한 공공시설에 매점등의
설치 계약대상이 있을 때에는
계약예정일 60일 이전에 구보에
게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4조(신청) 매점등의 설치 계약-

치계약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당해 시설을 관리하는 기관의 장애인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신문판매대 등의 설치계약서 (당해 시설을 관리하는 기관의 장이 정하는 소정양식)
2. 독립유공자유가족은 우선계약 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모자복지법에 의한 모자가정 여부는 구에서 직접 확인한다.

제5조(우선계약) ① 구청장 또는 그 소속기관의 장과 구 지방공기업의 장이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신청을 받은 때에는 일반인에 우선하여 장애인등과 계약하도록 하여야 하며, 장애인 등 2인이상이 신청한 경우 우선 순위는 별표로 정하고 그 이외는 구청장 또는 그 소속기관의 장과 구 지방 공기업의 장이 정한다.

----- 해당 -----

1. 매점등의 설치 계약신청서 (해당-----

<삭 제>

3. 이 조례에 따라 우선계약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구에서 확인이 가능한 서류는 생략)

제5조(우선계약) ① -----

----- 제4조에 따른 -----
----- 장애인, 65세 이상 노인, 한부모가족 또는 한부모가족복지단체,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이하 “장애인등”이라 한다)--- 장애인 등이 2명 이상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기간은 각 시설을 관리하는 기관의 장이 정하는 3년 이내의 기간으로 하되, 임대시설물의 명도가 지연되거나 천재지변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자의 귀책사유없이 1월이상 영업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만큼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6조(사업자의 의무)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한 자는 신문 판매대등을 직접 관리하여야 하나,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제2조관련 별표1의 장애인등급 2급 이상인 자는 대리인에게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사전에 당해 기관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신 설>

② 제1항에 따라
귀책사유 없이 1개월 이상

제6조(사업자의 의무) 제5조에 따라
매점등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 관련 별표 1의 장애인등급 2급 이상인 장애인
해당

제6조의2(계약의 해지) 계약을 체결한 장애인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계약을 체결한 사람이 제6조를 위반한 경우
2. 허위로 허가를 받아 계약을 한 경우
3. 계약을 체결한 사람이 사망한 경우
4. 그 밖에 관련법령 및 계약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제7조(사용료) 신문판매대등의 설치에 따른 시설 사용료의 징수 기준 및 방법에 관하여는 지방제정법, 지방재정법시행령 및 서울특별시마포구공유재산관리조례등 관계 규정에 따른다.

제7조(사용료) 매점등----- 징수 기준 및 방법은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 시행령」 및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등 ---.

[별표]

장애인등 2인이상이 신청한 경우 우선순위(제5조 관련)

[별표]

장애인등 2명 이상이 신청한 경우 우선순위(제5조제1항 관련)

순위	장애인	65세이상 노인	모자가정 의 여성	독립유공자 유가족
1	(생략)			
2	미과세 대상자	미과세 대상자	(생략)	미과세 대상자
3	미과세 대상자	-	<선 선>	-

순위	장애인	65세 이상 노인	한부모가족·한부모가족복지단체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 및 그 유가족
1	(현행과 같음)			
2	납세실적이 없는 사람 (주민세 개인관등분 제외)	납세실적이 없는 사람 (주민세 개인관등분 제외)	(현행과 같음)	납세실적이 없는 사람 (주민세 개인관등분 제외)
3	납세실적이 없는 사람 (주민세 개인관등분 제외)	-	한부모가족 복지단체	-

※ 이 표에서 “미과세 대상자”란 개인
균등할 주민세를 제외한 국세 및 지
방세의 납부 및 과세실적이 없는 자
를 말한다.

<신 설>

<삭 제>

※ 신청자의 우선순위가 같은 경우에는
다음 순위에 따른다.

1. 재산 및 월 평균소득이 적은 사람
2. 세대원 중 장애인이 있는 사람
3. 부양가족 수가 많은 사람

서울특별시마포구공공시설내의신문·복권
판매대, 매점및식음료용자동판매기설치
계약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2014년 11월 26일)

마포구의회 복지도시위원회
전문위원 김 건 재

서울특별시마포구공공시설내의신문·복권판매대,
매점및식음료용자동판매기설치계약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1. 안 건 명

서울특별시마포구공공시설내의신문·복권판매대,매점및식음료용
자동판매기설치계약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출일자 및 제출자

가. 제출일자 : 2014년 11월 17일 (월)

나. 제 출 자 : 마포구청장

3. 복지도시위원회 회부일자

2014년 11월 21일 (금)

4. 개정근거

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8조의2

5. 검토의견

0 본 개정안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의 상위법에 독립유공자와 국가유공자에 대한 생업지원 규정이 신설되고, 서울지방보훈청의 “매점 및 자판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지원대상 범위 착오사항 수정의견” 송부 등에 따라 조례안 [별표] “장애인등 2인 이상이 신청한 경우 우선순위” 대상에 “국가유공자 및 그 유가족” 등을 신설하며, 그 밖에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 등에 따라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0 [별표] “장애인등 2명 이상이 신청한 경우 우선순위”에서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 및 그 유가족”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8조의2 규정에 독립유공자와 국가유공자를 포함하여 그 유족뿐만 아니라 가족도 생업지원 대상에 포함하고 있는바, 이를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 하고, 안 제1조 중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과 안 제5조제1항 중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은 각각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현행	개정안	수정안
<p>제5조(우선계약) ① 구청장 또는 그 소속기관의 장과 구 지방공기업의 장이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신청을 받은 때에는 일반인에 우선하여 장애인 등과 계약하도록 하여야 하며, 장애인등 2인이상이 신청한 경우 우선순위는 별표로 정하고 그 이외는 구청장 또는 그 소속기관의 장과 구 지방공기업의 장이 정한다.</p> <p>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기간은 각 시설을 관리하는 기관의 장이 정하는 3년 이내의 기간으로 하되, 임대시설물의 명도가 지연되거나 천재지변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자의 귀책사유없이 1월이상 영업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만큼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p>	<p>제5조(우선계약) ① ----- ----- 제4조에 따른----- ----- -- 장애인, 65세 이상 노인, 한부모가족 또는 한부모가족복지단체, <u>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u>(이하 “장애인등”이라 한다)-- 장애인등이 2명 이상 ----- ----- ----- ----- ----- ② 제1항에 따라----- ----- ----- ----- ----- 귀책사유 없이 1개월 이상 ----- ----- -----</p>	<p>제5조(우선계약) ① ----- ----- ----- ----- ----- <u>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u> ----- ----- ----- ----- ----- ----- ② (개정안과 같음)</p>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별표] 장애인등 2인이상이 신청한 경우 우선순위(제5조 관련)					[별표] 장애인등 2인 이상이 신청한 경우 우선순위(제5조제1항 관련)					[별표] 장애인등 2인 이상이 신청한 경우 우선순위(제5조제1항 관련)				
순위	장애인	65세이상 노인	모자가정 의 여성	<u>독립유공 자 유가족</u>	순위	장애인	65세 이상 노인	한부모가 족·한부 모가족복 지단체	<u>독립유공 자·국가 유공자 및 그 유가족</u>	순위	장애인	65세 이상 노인	한부모가 족·한부 모가족복 지단체	<u>독립유공 자·국가 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u>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1	(개정안과 같음)			
2	미과세 대상자	미과세 대상자	(생 략)	미과세 대상자	2	남세실적이 없는 사람 (주민세 개인균등분 제외)	남세실적이 없는 사람 (주민세 개인균등분 제외)	(현 행 과 같 음)	남세실적이 없는 사람 (주민세 개인균등분 제외)	2	남세실적이 없는 사람 (주민세 개인균등분 제외)	남세실적이 없는 사람 (주민세 개인균등분 제외)	(개 정 안 과 같 음)	남세실적이 없는 사람 (주민세 개인균등분 제외)
3	미과세 대상자	-	<신 설>	-	3	남세실적이 없는 사람 (주민세 개인균등분 제외)	-	한부모가족 복지단체	-	3	남세실적이 없는 사람 (주민세 개인균등분 제외)	-	한부모가족 복지단체	-

7. 관계법령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 2014.5.21.] [법률 제12668호, 2014.5.21., 일부개정]

제16조의2(생업지원)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은 소관 공공시설에 식료품·사무용품·신문 등 일상생활용품의 판매를 위한 매점 운영 또는 자동판매기 설치를 허가하거나 위탁할 때 제6조에 따라 등록·결정된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허가나 위탁을 받은 자는 중대한 질병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직접 그 사업에 종사하여야 한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14.4.29.] [법률 제12386호, 2014.1.28., 일부개정]

제68조의2(생업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는 소관 공공시설 안에 식료품·사무용품·신문 등 일상생활용품의 판매를 위한 매점의 운영이나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를 허가 또는 위탁하는 경우 제6조에 따라 등록·결정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이를 우선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공단체의 범위, 매점의 규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위탁을 받은 자는 중대한 질병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직접 그 사업에 종사하여야 한다.